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46호
2022. 1. 3.(월)



목 차**◆ 고 시**

제2021-737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2
제2022-7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3
제2022-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관련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10
제2022-11호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2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7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 집회금지개요

- 가.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의 집회
- 50명 이상인 경우 집중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집회 가능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 나. 금지기간 :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1월 16일 24시까지
- 당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05호) 금지기간 :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 다. 위반 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43432, '21.12.31.)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적용기간: ' 22. 01. 03.(월) 0시 ~ ' 22. 1. 16.(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5. 업종별 방역수칙

① 목욕장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추가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대화) 종사자-이용자간 등 시설 내 대화 자제 ◦ (공용물품) 1회용컵 비치 및 개인컵 사용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휴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② 이·미용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필요시 도입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휴면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③ 숙박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 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조 제2의2호, 제2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년 01월 03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관련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종전방역강화 조치의 2주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시내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1. 기 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 **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종교시설 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밀집도 완화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인정	
	⑥ 음식섭취 등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정교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정교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정교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 구성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포함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4. 법적근거(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49조1항제2호의2,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및 제4항, 제79조제3호의3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또는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

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년 1월 3일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김은경 실무사무관(02-2133-2522)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

붙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299명)
 -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 접종완료자만을 의미하며,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

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안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 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 종교행사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①예방접종자인(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설교자가 ②설교(강론, 법문, 설교 등)시에 한해 ③가림막(아크릴판) 설치 및 ④설교자와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진행자), 인도자, 참석 신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접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접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
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호**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2. 적용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3. 적용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¹⁾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

1)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 명령」에 따름
 ※ 집합·모임·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공고에 따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년 1월 3일(월)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 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권고)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추가적용 수칙(콜라텍·무도장 한정)	
	◦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위 1), 2)와 같은 '접종완료자 등' 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추가적용 수칙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 (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계 사용 등) 공용집계·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비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비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